사무분장 규정

제정 1994. 04. 15. 제86차 개정 2024. 10. 14.

제1장 총칙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정함으로서 사무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적용)** ① 본 대학교의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 - ② 본 대학의 부속 한방병원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.
- **제3조(관련업무의 처리)**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관련 사무는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 서 처리하며, 비중이 동일하거나 또는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업무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.
- 제4조(부서내의 분장) 부서내의 계별 또는 담당자별 업무분장은 부서장의 결정에 따른다.

제2장 총장 직속 기구

제5조(비서실) 비서실은 총장 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제6조(학생군사교육단)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
- 2.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
- 3. 군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대학생, 학사예비후보생의 관리업무
- 4. 대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
- 5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장 대학교 본부

제1절 교무연구처

제7조(교무연구팀) 교무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교무연구처장 직인 관수
- 2. 교무관계 예규
- 3. 교무위원회 소집 및 사무 처리

- 4. 교무 통계
- 5. 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사항
- 6. 교원 승진, 강임 관계
- 7. 교원 기간제 임용 관계
- 8. 교원 인사 관계 기본 통계
- 9. 교원 위촉 및 교원 인사에 관한 기록 보관 및 유지
- 10. 교원 제증명 발급 관계
- 11. 교원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관리
- 12. 기타 교원인사 일반에 관한 사항
- 13. 교원 교육훈련
- 14. 전직, 전보 관계
- 15. 휴직, 복직 관계
- 16. 직위해제, 정직 관계
- 17. 교원 의원면직, 정년퇴직, 직권면직, 파면 관계
- 18. 교원 복무 총괄에 관한 사항
- 19. 교원 연구실 및 근무에 관한 사항
- 20. 교원 포상 관계
- 21. 교원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
- 22. 교원 재심에 관한 사항
- 23. 교원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
- 24. 교수업적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단과대학 심의결과 최종 확인
- 25. 교원의 사회봉사 활동 관리
- 26. 교원의 국내・외 출장 중 공무에 관한 사항
- 27. 교원의 학술연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28. 학술연구진흥 기초계획 및 정책 수립
- 29. 학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30. 학술연구활동지원 연구비 배정 및 관리
- 31. 학술연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
- 32. 교내연구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33. 교원의 국내 · 외 파견 및 연수
- 34. 교원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
- 35. 교원 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
- 36. 학회개최 지원금 업무
- 37. 연구소 설치 신청 및 실적평가 업무
- 38. 연구소 지원 등 연구소에 관한 일반적 사항

- 39. 연구윤리위원회, 생명윤리심의위원회,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
- 40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8조(학사지원팀) 학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학사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학사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학사제도 기본계획 수립,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4. 학사관리 제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
- 5. 학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6. 수업관리의 적정성, 운영성과 등 분석,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- 7. 각종 지표관리(학사분야)에 관한 사항
- 8.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9. 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10. 전공교과위원회 및 교과과정개발위원회의 위촉현황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
- 11. FIND칼리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협의 진행에 관한 사항
- 12. 강의평가 등 교육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(우수강의평가 근거개발 및 강의 효과검증 등 강의 질 개선 등)
- 13. 수업시간표에 관한 사항
- 14. 수업계획서에 관한 사항
- 15.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
- 16. 소수집단학생 수강 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17. 수업 진행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[출결관리(출결관리시스템 포함), 휴/보강, 출석부 관
- 리, 결석자 상담일지 등]
- 18. 전임교원 책임시간 관리에 관한 사항(초과시간, 외래출강 등)
- 19. 책임시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
- 20. 강의실 관리(물품구입, 대여 및 기자재 관리 등)에 관한 사항
- 21.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
- 22. 집중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
- 23. 학적변동(제적, 재입학 및 휴·복학 등) 및 학적통계에 관한 사항
- 24. 학적 데이터(학적부 등재) 및 학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
- 25. 학적 조회 및 회보에 관한 사항
- 26. 편입학 및 재입학 여석 산출에 관한 사항
- 27. 전공 배정에 관한 사항
- 28. 다전공(복수·융합·부전공)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
- 29. 전과(부) 및 학과(부)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
- 30. 교직 이수자 선발 및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

- 31. 교직 교과과정 관리에 관한 사항
- 32. 교직과정 수업관리(시간표 배정, 수업 상황 등)에 관한 사항
- 33. 교직 적 · 인성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
- 34.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시행에 관한 사항
- 35.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사항(이수 예정자 배정, 순회지도 등)
- 36.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- 37. 교원양성위원회 및 교직과정 운영 실무 위원회에 관한 사항
- 38.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
- 39. 학기인정, 성적처리 및 학사경고 · 유급에 관한 사항
- 40. 학점인정(편입학자 및 장・단기 해외연수)에 관한 사항
- 41. 진급, 수료, 졸업 및 학위수여식에 관한 사항
- 42. 졸업사정위원회에 관한 사항
- 43. 제증명발급용 총장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
- 44. 증명서발급(한글, 영문)에 관한 사항
- 45. 자동증명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
- 46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전문개정 2023.7.1.]

제2절 기획처

제9조(기획예산팀) 기획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· 조정
- 2. 학교 비전 및 이념 업무
- 3. 장·단기 발전계획 수립·추진
- 4. 직제 신설·개편 및 정원조정
- 5. 학생 모집단위 설치, 폐지 및 정원조정
- 6. 교직원 수급계획 수립・조정
- 7. 학칙 및 제규정 제정, 개폐 및 관리
- 8. 제안제도
- 9. 국고지원금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
- 10. 예산편성 · 조정 및 심사분석
- 11. 예산통제
- 12. 학생 납입금 및 교직원 보수 책정
- 13. 정부 재정지원사업 업무 총괄
- 14. 장기 시설계획 수립 및 조정
- 15. 공간 조정 및 용도변경

- 16. 법인이사회, 대학평의원회,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련 업무
- 17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10조(평가팀) 평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· 인증에 관한 사항
- 2.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- 3. 삭제 (2024.10.14.)
- 4. 삭제 (2024.10.14.)
- 5. 학과 단위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(개정 2024.10.15.)
- 6.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11조(감사팀) 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감사 및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
- 2. 법무 업무에 관한 사항
- 3.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항

제11조의2(IR센터) IR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데이터 기반 대학의 성과관리 정책연구 및 데이터 분석·관리에 관한 사항
- 2. 중장기발전계획 성과지표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대학정보공시 및 교육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
- 4. 교육수요자 만족도, 핵심역량 진단 등 교육성과 데이터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(개정 2024.10.15.)
- 6. 행정부서, 학과 등 성과관리 분석에 관한 사항 (개정 2024.10.15.)
- 7. 대학평가 관련 데이터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4.1.31.]

제3절 학생취업지원처

제12조(학생지원팀) 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학생취업지원처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
- 2. 학생 통계에 관한 사항(학생 기록부 관리)
- 3. 통학 관련 서류 발급
- 4. 미디어센터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
- 5. 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6. 장학, 학자금융자 등의 관련 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항
- 7. 학위복 관리에 관한 사항

- 8. 학생 상벌
- 9. 학생지도위원회 운영 및 학생지도 대책 수립
- 10. 학생 자율활동 및 자치기구의 지도 및 지원
- 11. 학생 수혜 경비 예산 편성 및 지도
- 12. 학생 동원에 관한 사항
- 13. 학생 간행물 관리에 관한 사항
- 14. 학생 보건,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
- 15. 장학금 관리에 관한 사항
- 16.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
- 17. 졸업준비에 관한 사항
- 18. 학군단 관리, 지원에 관한 사항
- 19. 신입생 예비대학에 관한 사항
- 20. 학생증 발급 등의 각종 학생민원 업무 대행
- 21. 교내 각종 정보 안내
- 22. 학생상담에 관한 사항
- 23. 생활협동조합 및 복지시설에 관한 업무
- 24. 신입생 입학식에 관한 사항
- 25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13조(취업진로지원팀) 취업진로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채용 관련 정보수집, 자료선별 게시 및 추천에 관한 사항
- 2. 취업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
- 3. 취업 진로 상담에 관한 사항
- 4. 취업설명회에 관한 사항
- 5. 정보지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
- 6. 기업체 D/B 관리에 관한 사항
- 7. 기업체 동문회 현황 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8. 취업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항
- 9. 취업진로지원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
- 10. 취업과 진로 교과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11. 부직 알선에 관한 사항
- 12. 취업 관련 행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13. 각종 직업심리검사에 관한 사항
- 14. 취업 진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- 15. 프로그램 만족도 및 환류, 보완, 개선에 관한 사항
- 16. 인성지도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

- 17. 장애학생(장애인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)의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
- 18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14조(창업지원팀) 창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학생 및 교직원 창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- 2. (예비)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, 벤처창업 관련 사업 유치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4. 교내 창업 관련 정책개발 및 대학평가 지표 대응에 관한 사항
- 5. 창업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15조(현장실습지원센터)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
- 2.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센터주관 국내외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학과(부)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현장실습 참여 기관 발굴 및 협약체결, 관리에 관한 사항
- 6. 현장실습 참여 학생 사전교육 및 상담, 수행점검,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
- 7. 현장실습 평가 및 업무 개선 · 발전에 관한 사항
- 8. 현장실습 운영 시기별 실적 내용에 대한 주기적 만족도 및 환류, 보완, 개선 등 체계적 노력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16조(사회봉사단) 사회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사회봉사활동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
- 2.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시행
- 3. 사회봉사활동의 조직ㆍ지원 및 관리
- 4. 사회봉사 관련 동아리 지원
- 5.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및 평가
- 6. 사회봉사에 관한 대외협력 및 연락조정
- 7. 국제봉사활동의 개발·지원
- 8. 사회봉사 사례발표 유공자 포상 및 소식지 발간
- 9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17조(장애학생지원센터)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
- 2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」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
- 3. 장애학생의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(도우미 운영 포함)

- 4.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18조(체육부) 체육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각 종목별 선수 관리에 관한 사항
- 2. 훈련 및 대회출전 등에 소요되는 지원금에 관한 사항
- 3.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
- 4. 각 경기단체 및 체육회에 관한 사항
- 5. 후원금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
- 6. 각 종목별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
- 7. 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
- 8. 각 종목별 선수들의 취업ㆍ경력ㆍ경기성적 등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19조(생활관) 생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생활관(맑음관, 믿음관, 행복기숙사) 운영 및 관생수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
- 2. 관생 자치회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관생 생활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생활관(맑음관, 믿음관, 행복기숙사) 각종 행사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- 5. 관내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
- 6. 입 · 퇴사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절 대외협력처

제20조(대외협력팀)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
- 2. 대외 각종 기관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
- 3.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
- 4. 총동문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
- 5. 발전기금 모금 등 재원확충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6. 발전기금 모금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7. 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8. 발전기금 기부 대상자 DB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9. 발전기금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
- 10. 발전기금 대내·외 홍보 및 SNS 관리에 관한 사항

11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21조(홍보팀) 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대학 전반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, 조정, 분석, 관리
- 2. 대내외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
- 3.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보도자료 송부에 관한 사항
- 4. 홍보 사진 및 사진 필름 제작, 관리 보관
- 5. 대학의 광고 업무
- 6. 교사의 편찬과 발행 및 기타 홍보자료의 발간에 관한 사항
- 7. 학교요람 발간에 관한 사항
- 8. 대학 약사에 관한 사항
- 9. 대학 종합 이미지 작업(CI, UIP)에 관한 사항
- 10. 대학 홍보 영상물 및 홍보인쇄물 제작에 관한 사항
- 11. 대학 홍보대사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12. SNS를 통한 대학 홍보 및 관리
- 13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절 국제교류처 [제목개정 2024.1.31.]

제22조(국제교류팀) 국제교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국제교류계획 수립
- 2. 해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
- 3. 외국기관의 현황자료 수집 및 학술교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
- 4. 외국인 유학생 모집,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5.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지도, 상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- 6. 외국인 유학생 출·입국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종전 제3장제4절에서 이동 (2024.1.31.)]

[제목개정 2024.1.31.]

[전문개정 2024.1.31.]

제22조의2(국제교육원) 국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교환학생 선발(파견, 수용)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2. 장 단기 해외연수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한국어연수생 모집,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5. 한국어연수생의 학사지도, 상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
- 6. 한국어연수생 출·입국에 관한 사항
- 7. 외국어 강좌(영어 등) 운영
- 8. 어학프로그램 홍보 및 어학 시험 운영
- 9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[본조신설 2024.1.31.]

제6절 입학처 [제목개정 2024.1.31.]

제23조(입학팀) 입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입학(편입학)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입학(편입학)전형에 관한 사항
- 3. 입학(편입학)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
- 4. 입학제도 연구 ·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5. 특별전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- 6. 입시분석자료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7. 입시 관련 전산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
- 8. 입학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9. 입학에 관한 홍보
- 10. 학번부여에 관한 사항
- 11. 입학사정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12. 입학사정관제 연구에 관한 사항
- 13. 입학사정관제 전형개발 및 선발에 관한 사항
- 14. 고교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입학사정관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
- 15. 입학사정관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- 16. 입학사정관제 입학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- 17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종전 제3장제5절에서 이동 (2024.1.31.)]

제24조(입학지원팀) 입학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입시홍보 전반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, 조정, 분석, 관리
- 2. 입시 관련 홍보 물품 및 인쇄물 발간에 관한 사항
- 3. 고교 입시홍보에 관한 사항
- 4. 대학 입학정보박람회 관련 업무
- 5. 신입생 입시홍보 설문조사 업무
- 6. 고교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(개정 2023.7.1.)
- 7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종전 제3장제5절에서 이동 (2024.1.31.)]

제7절 행정지원처 [제목개정 2024.1.31.]

제25조(행정지원팀) 행정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관인 보관 및 관인 사용 통제 사항
- 2. 문서통제, 수발,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
- 3.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
- 4. 민원서류 접수, 처리 및 일반업무 사항
- 5. 일반문서 보관, 보존 업무
- 6. 전례 의식에 관한 사항
- 7.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
- 8. 우편물 접수 관리
- 9. 각종 회의 및 행사 지원, 회의록 작성 보관
- 10. 관보 관리
- 11.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 (상벌 등 포함)
- 12. 직원 복무관리, 복지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
- 13. 직원 신원조회 및 신원 특이자 관리에 관한 사항
- 14. 직원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
- 15. 교직원 연금 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
- 16. 교직원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
- 17. 직원 제증명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
- 18. 차량관리 업무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19. 외부공문 발송
- 20. 인쇄실 운영에 관한 사항
- 21. 수위실, 야간경비 운영 업무
- 22. 학교시설물 사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
- 23. 법인 관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- 24. 청소, 경비 용역 입찰 · 계약에 관한 사항(보험업무포함)
- 25. 행정소모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
- 26. 교내 청소에 관한 사항
- 27.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
- 28. 일용직 수급에 관한 사항
- 29. 총장 비서실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
- 30. 기타 타처, 타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- 31. 물품구매 계획 수립 및 구입 업무
- 32. 공사 도급 업무(입찰, 계약)

- 33. 물품 수리에 관한 사항
- 34. 물품 등록 및 관리
- 35. 물품 손 망실 및 불용처리
- 36.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총괄 업무(단, 전산 관련 업무는 전산정보팀과 협의 후 결정)
- 37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종전 제3장제6절에서 이동 (2024.1.31.)]

제26조(회계팀) 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학생 등록금 수납에 관한 사항
- 2. 학비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- 3. 교직원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
- 4.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업무
- 5. 교직원 연말정산 관련 업무
- 6. 제세 및 공과금 납부에 관한 사항
- 7. 각종 세무 관련 업무
- 8.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9. 회계전표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
- 10. 각종 지출 및 출납 업무
- 11. 자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12. 유가증권, 채권 취급에 관한 사항
- 13. 법인카드 관련 업무
- 14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종전 제3장제6절에서 이동 (2024.1.31.)]

제27조(시설팀) 시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교육용재산(건물, 토지, 시설물 등)의 현황파악 및 사후관리
- 2. 시설물의 신축, 증축 및 개축에 관한 사항
- 3. 시설물의 공사·용역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(다만, 시설팀장의 전결권 내의 공사 및 용역)
- 4. 시설의 합리적인 배치, 위치이동, 시설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
- 5. 기본시설(신・증축)의 하자처리에 관한 사항
- 6. 각종 공사의 시공·감독 및 자재의 검수,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
- 7. 공사 시공도면 및 건축물대장 정리보관에 관한 사항
- 8. 기본시설 환경(대기, 수질)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
- 9.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
- 10. 전기, 통신, 급배수, 난방, 환경, 조경, 소방시설 및 기본시설에 관한 사항
- 11. 직장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
- 12. 시설 통계 및 통제 업무

- 13. 시설 관련 일용직 관리에 관한 사항
- 14.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
- 15. 시설설비 보수 소모품 구입에 관한 사항
- 16. 위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
- 17. 연구실(실험실습실) 안전관리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- 18.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- 19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종전 제3장제6절에서 이동 (2024.1.31.)]

제28조(예비군연대) 예비군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예비군 조직편성, 자원관리 및 교육
- 2. 민방위 조직편성, 자원관리 및 교육
- 3. 예비군, 민방위, 학생의 비상계획
- 4. 병무상담 및 학적변동자 병무 처리
- 5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종전 제3장제6절에서 이동 (2024.1.31.)]

제8절 미래교육혁신원 [본절신설 2024.1.31.] [종전 제3장제7절에서 이동 (2024.1.31.)]

제29조(교육혁신팀) 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대학교육혁신 질 관리 및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
- 2. 역량기반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전문개정 2023.11.22.]

제30조(교수학습개발센터)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혁신적 수업모델 개발,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
- 2.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전조사 및 성과분석 등 환류에 관한 사항
- 4.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·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6.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전조사 및 성과분석 등 환류에 관한 사항
- 7. 교내외 유관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비교과 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전문개정 2023.11.22.]

제31조(교육성과관리센터) 교육성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학생역량평가 관련 연구·개발 및 평가·환류 지원에 관한 사항

- 2. 핵심역량진단 계획, 운영, 환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교육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- 4. 비교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5. 비교과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
- 6. 비교과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7. 교육성과관리센터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8. 전공능력평가 가이드 개발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전문개정 2023.11.22.]

제32조(원격교육개발센터) 원격교육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원격수업 개발, 운영, 관리 등 원격교육 질 관리에 관한 사항
- 2. 학습관리시스템(LMS)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e-러닝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외부 기관과의 원격수업 공동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MOOC 컨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시청각 기자재 관리 및 수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8.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전문개정 2023.11.22.]

제4장 각 대학 및 대학원

제33조(각 대학 교학지원팀) 각 대학 교학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학장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
- 2. 단과대학 교수회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
- 3. 전임교원 초과시간 및 외래교수 출강시간 관리에 관한 사항과 휴·결강 통계에 관한 업무
- 4. 수업진행 확인 및 관리(휴・보강)에 관한 사항
- 5. 학생 출 결석에 관한 사항
- 6. 학생 취업 추천에 관한 사항(단과대학장 명의 발급)
- 7. 강의 진행 및 시험 진행, 강의실 관리에 대한 협조 업무 사항
- 8. 강사 제청에 관한 협조 업무 사항
- 9. 취업, 홍보물 게시 협조 업무 사항
- 10. 학생상담 및 지도 결과 협의에 관한 사항
- 11. 학생 상ㆍ벌에 관한 상신 및 협조 업무 사항

- 12. 학생 과외활동 지도 결과 협의에 관한 사항
- 13. 분담 지도교수제 관리 운영 및 협조 업무 사항
- 14. 단과대학별 행사 계획 및 집행 결과 협의에 관한 사항
- 15. 단과대학 학과 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, 간행물 발간 지도와 협조 업무 사항
- 16. 실험실습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
- 17. 실험실습기구 보관관리에 관한 협조 업무 사항
- 18. 현장실습 및 견학 계획
- 19. 대학 내 비품 관리에 관한 협조 업무 사항
- 20. 우편물 전달
- 21. 교수업적평가 실적에 대한 1차 심의와 관련한 업무
- 22. 교원의 국내・외 출장 중 사무에 관한 사항
- 23. 학과소속 조교 인사에 관한 사항
- 24. 학적(휴학, 복학)에 관한 사항
- 25. 계약학과에 관한 사항
- 26. 학과 학문분야 평가에 관한 사항
- 27. 학과단위 교육수요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
- 28. 단과대학 학과 학생교외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29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4조(한의과대학 한의학교육실) 한의과대학 한의학교육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한의학 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
- 2.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개발, 개편 및 평가
- 3. 강의계획과 신교육기법, 교수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 4. 한의과대학 재학생에 대한 학습법 프로그램 운영
- 5. 기초종합시험, 임상종합시험, 임상술기평가(OSCE, CPX 등)의 시행
- 6. 졸업역량 평가결과의 분석 및 피드백
- 7. 한의과대학의 CBT(Computer Based Test, 이하 "CBT"라 함)시행 및 운영체제 관리
- 8.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9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5조(FIND칼리지) FIND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교양교육센터
- 가. 핵심역량 지수 기반 교양 교육과정 체계 구축 및 운영
- 나. 교양 교육과정 기획 및 발전전략 수립
- 다. 교양 교과목 개발, 편성, 운영, 평가 업무
- 라. 그 밖에 센터 운영목적에 부수되는 사항
- 2. FIND-MYWAY센터

- 가. FIND인성교육 교육과정 담당
- 나. 인성교육 매뉴얼 개발, 운영, 평가 업무
- 다. 그 밖에 센터 운영목적에 부수되는 사항
- 3. 교양영어센터
- 가. 교양영어 교과목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
- 나. 교내·외 위탁(연수) 교육 운영
- 다. 외국어 교육 관련 교재 개발
- 라. 외국어능력평가시험(모의토익 등) 운영
- 마. 그 밖에 센터 운영목적에 부수되는 사항

제36조(대학원지원팀)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대학원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원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
- 2. 입학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
- 3. 수업 진행 및 시험관리, 출·결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학칙에 관한 사항
- 5. 대학원 각 위원회 운영 및 주임교수 회의에 관한 사항
- 6. 교원 및 외래교수, 주임교수 인사 추천에 관한 사항
- 7. 학적부 작성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8. 대학원 강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
- 9. 학술연구회(학생자치단체) 지도에 관한 사항
- 10. 학적변동(휴학, 퇴학, 제적, 복학, 재입학등)에 관한 사항
- 11. 대학원생 병사 관계에 관한 사항
- 12. 대학원생 상 · 벌에 관한 사항
- 13. 학적 관계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
- 14. 학위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
- 15. 장학에 관한 사항
- 16. 교학 관계 제반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
- 17.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18. 실험실습비(교과운영비)의 집행에 관한 사항
- 19. 공개강좌 연구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20. 교육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21.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지도에 관한 사항
- 22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장 부속기관·부설연구소

제1절 부속기관

제37조(한방병원) 한방병원의 사무분장은 한방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.

제38조(학술정보원) 학술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학술지워팀
- 가. 원장 직인 및 장서인 관수에 관한 사항
- 나. 학술정보원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
- 다. 장서개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라. 학술정보원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
- 마.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및 선정 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
- 바. 학술정보자료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
- 사. 학술정보자료의 분류 및 편목, 장비 작업에 관한 사항
- 아. 학술정보자료의 기증 및 수증에 관한 사항
- 자. 학술지원팀 문서수발, 편철 및 통제 관리에 관한 사항
- 차. 도서 원부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사항
- 카. 학술정보자료의 제본 및 수리에 관한 사항
- 타. 각 열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파. 학술정보자료의 관내·외 대출 및 반납에 관한 사항
- 하. 학술정보 이용지도 및 통제에 관한 사항
- 거. 학술정보자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너. 연체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
- 더. 타 대학도서관 및 학술정보기관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
- 러. 대학도서관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머. 학술지원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버. 그 밖에 학술지원팀 운영목적에 부수되는 사항

2. 전산정보팀

- 가. 대학 및 학술정보원의 전산화에 관한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
- 나. 컴퓨터 및 전산망의 관리·운영
- 다. 전산관련 장비 구매계획 수립 201/202 205
- 라. 전산망 보안 관련 업무
- 마. 학사ㆍ행정업무의 개발, 운영 및 전산 처리 업무
- 바. 프로그램 및 정보, 파일 관리
- 사. 전산관련위원회 소집 및 사무 처리
- 아. 교수, 직원 및 학생의 컴퓨터 실습 지원
- 자. 컴퓨터 이용에 관한 상담
- 차. 교내 전산망 이용 및 교육상담

- 카. 전산실습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타. 정보보안 관련 업무
- 파.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산 관련 업무
- 하. 그 밖에 전산정보팀 운영목적에 부수되는 사항

제39조(산학협력단) 산학협력단의 사무분장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른다.

제40조(실습목장) 실습목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목장경영관리에 관한 서류의 유지,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
- 2. 목장운영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선정 및 시설 증ㆍ개축 요청에 관한 사항
- 3. 가축의 도태. 매각. 구입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1조(실습농장) 실습농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농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농장의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2조(미디어센터)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미디어센터의 정기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- 2. 정규뉴스와 관련된 편성과 제작 및 보도에 관한 사항
- 3. 웹진과 관련된 학술 및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3조(보건소)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상담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
- 2.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진료에 관한 사항
- 3. 교직원 및 학생의 진료통계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4조(심리상담 · 인권센터) 심리상담 ·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상담팀
- 가.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
- 나. 집단상담에 관한 사항
- 다. 학생상담 관련 초청 강연에 관한 사항
- 라. 연구 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
- 마. 홍보물 발간에 관한 사항
- 바. 심리상담센터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사. 장애학생의 개별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
- 아. 그 밖에 상담팀 운영목적에 부수되는 사항

2. 인권팀

- 가. 학내 구성원 간 또는 당사자 일방만의 인권침해, 갑질 등 관련 민원·고충 처리 및 갈 등·분쟁조정 상담과 조사에 관한 사항
- 나.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, 정책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- 다. 성희롱 · 성폭력 예방,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,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라. 성희롱 ·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과 조사에 관한 사항
- 마. 성희롱 ·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상담에 관한 사항
- 바. 성희롱 ·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상담에 관한 사항
- 사.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보고에 관한 사항
- 아. 기타 성희롱 · 성폭력 사건 및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
- 자. 그 밖에 인권팀 운영목적에 부수되는 사항

제45조(평생교육원)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평생교육팀
- 가. 지역의 시민을 위한 다양한 성인교육의 실시 및 공개강좌의 개설
- 나. 봉사교육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
- 다. 평생교육에 관한 자료수집, 개발 및 보급
- 라. 연구지의 발간
- 마. 평생교육위원회 소집 및 사무처리
- 바.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환류 개선에 관한 사항
- 사. 기타 교육·훈련·연수사업(외부 연구비 지원사업 제외)
- 아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- 2. HRD직업능력개발팀
- 가. 국가기술자격 취득 과정 개설 및 운영
- 나.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
- 다. 사업체 위탁교육
- 라. 우리대학 MOU 기관과의 협력사업
- 마. 지역산업맞춤형 인재양성사업
- 바. 훈련과정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환류 개선에 관한 사항
- 사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- [전문개정 2024.1.31.]

제46조(공학교육센터) 공학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공학교육인증 및 공학교육혁신 방향 설정 업무
- 2. 공학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
- 3. 학생진로 및 학업이수계획 지도방안 개발
- 4. 프로그램 평가 및 교육과정 평가 등 평가방법 연구

- 5. 사이버 공학교육 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교육매체 전달수단 개발
- 6. 기타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사업
- 7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7조(발달장애인통합지원센터) 발달장애인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돌봄 프로그램 운영
- 2.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
- 3.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
- 4. 발달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
- 5. 발달장애 치료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개발
- 6. 그 밖에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48조(청년지원센터)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통한 취약계층 청년 발굴
- 2. 청년 대상 개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심층 상담
- 3. 청년 대상 진로지도 및 취·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- 4. 청년 대상 식사지원, 법률고민 지원, 건강검진 등 삶의 질 개선 프로그램 운영
- 5. 청년의 사회진입 이후의 사후관리
- 6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9조(요양보호사교육원) 요양보호사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요양보호교육원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
- 2. 요양보호교육과정 개설 · 운영 관리
- 3. 요양보호교육원생 학사관리
- 4. 요양보호교육원 강사관리
- 5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2절 부설연구소

제50조(부설연구소) 부설연구소(원)의 사무분장은 각 연구소(원) 규정에 따른다.

부칙(기획예산팀-332호, 2022. 6. 8.)

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5697호, 2022. 11. 17.)

이 규정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714호, 2023, 03, 31.)

이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1438호, 2023. 07. 04.)

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2454, 2023.11.22.)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300, 2024.01.31.)

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2188, 2024.10.14.)

이 규정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